

2023년도 「울산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수출초보기업 지원사업 모집 공고

2023년도 중소벤처기업부와 울산광역시가 지원하는 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수행자로 지정된 울산테크노파크에서 지원대상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오니,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울산지역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3년 9월 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울산광역시장, 울산테크노파크원장

1. 지원개요

- **(사업명)** 울산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수출초보기업 지원사업)
- **(사업목적)** 울산지역 주력산업* 기업 대상 수출지원을 통해, 지역 수출 애로기업의 수출 경쟁력 제고, 수출형 기업으로 전환을 지원
* 전기 자동차부품, 가스연료, 선박기자재, 기능성 화학소재
- **(지원기간)** 2023. 9. ~ 2023. 11. (약 4개월)

2. 지원대상(신청기업)

- 울산광역시에 소재한 중소기업(본사, 공장, 연구소)으로 주력산업 및 전 후방 연관산업 관련 수출 희망 기업 및 수출기업 중 수출 강소기업 이하 지원

구분	소비재	산업재
수출초보기업	전년도 수출액 10만불 이하 기업	전년도 수출액 30만불 이하 기업
수출주력기업	전년도 수출액 10만불~100만불	전년도 수출액 30만불~300만불
수출강소기업	전년도 수출액 100만불~500만불	전년도 수출액 300만불~1,000만불

3. 세부 지원내용

- **(지원절차)** 협약체결 및 관련 서류(사업계획서 외) 제출 등 필요 조건 충족 후 확정된 지원금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며, 지원금은 과제 결과보고서 제출 후 직접지원

※ 지원협약을 위반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 (지원프로그램 및 지원항목)

구분	프로그램	지원항목	지원규모	
수출 초보 지원	1:1 수출 코칭 (개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이어 발굴 전반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이어 확보, 해외시장 조사 바이어 리스트 추출 - 바이어 발굴, 홍보/마케팅, 이메일 작성 등 실무 - 글로벌 디지털 및 SNS 마케팅 전략 수립 • 수출 제품 개선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의 디자인 및 성능 개선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지원 	5,000천원 이내 (5개社 내외)	
	수출 활성화 (팩키지) *2가지 이상 선택必	제품 고급화	구매조건부 제품개선 시제품제작 지원 *최대 1천만원 지원, 구매조건 증빙 필수	10,000 ~ 20,000천원 (2개社 내외)
		시장조사, 일반컨설팅	파트너·바이어·원부자재공급선 발굴, 해외시장조사 지원, 해외진출 전략수립 *최대 5백만원 지원	
		홍보물제작	홍보를 위한 브로셔 및 동영상 제작 지원 *최대 5백만원 지원, 한국어로만 제작 불가	
		해외규격 인증	제품과 관련된 해외인증획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인증·시험비 등 지원 *최대 1천만원 지원, ISO등 기업인증 지원 불가	
		바이어 미팅 지원	바이어 국내초청(해외→국내) 또는 해외바이어 미팅(국내→해외) 항공료 지원 *최대 5백만원 지원, 항공(편도, 이코노미 기준)	
	법무컨설팅 지원	해외법인설립, 법률자문, 해외클레임 해결지원 등 수출목적의 법무 컨설팅 분야 *최대 5백만원 지원		
FTA활용, 관세제 교육	수출기업 실무자 대상 방문 컨설팅 및 교육 실시(울산세관 실시) *수혜기업 대상 필수 실시	신청 불필요		

※ 기업부담금은 지원금의 10% 이상 매칭(부가세 제외)

▶ 1:1수출코칭 : 총사업비 500만원 → 지원금(450만원) + 기업부담금(50만원)

▶ 수출활성화 : 총사업비 2,200만원 → 지원금(2,000만원) + 기업부담금(20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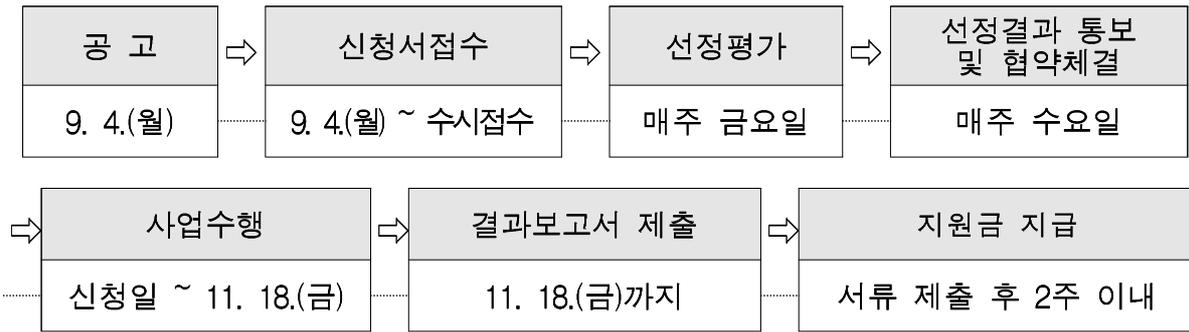
※ 지원금은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기업별 지원 금액은 다를 수 있음

4. 신청방법

○ (접수기간) 2023. 9. 4.(월) ~ 예산 소진시 까지 선착순

○ (신청방법)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기업지원사업관리시스템 (<http://platform.utp.or.kr>) 제출 후 담당자에게 확인

○ (추진일정)



- (문의) 울산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이상윤 수석연구원
(전화번호 : 052-277-1997 / 이메일 : sangyun@utp.or.kr)

5. 제출서류

연번	제출서류	비고
1	사업신청서 (직인날인)	●
2	신청서 內 기타 양식(신청자격 적정성,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등)	●
3	사업자등록증	●
4	울산 주축산업 업종 및 전후방 연관 업종 기업 매출증빙 *(세금계산서 등, 1건 이상 제출), *매출이 없는 경우 산업분류코드 또는 제품의 특징으로 판단	●
5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현재 기준)	●
6	2020년 ~ 2022년(3년) 국세청 제출 재무제표 ① 2020년 ~ 2022년 재무제표 *(국세청 홈택스 발급) ② 2022년 부가가치세표준증명 *(국세청 발급분)	●
7	2020년 ~ 2022년(3년) 직접 수출실적 증명서 *(한국무역협회 발급본 등)	◎
8	2018년 ~ 2022년(5년) 로칼 등 기타수출실적증명서 *(KTNET(U-Tradehub 발행본)	◎
9	회사 및 제품소개자료 등(브로셔, 카달로그 등)	●
10	견적서(사업비 산정 객관적 산출근거 必) *협약전까지 제출 가능	●
11	구매조건부 해당시 증빙이 가능한 서류 - 매매계약서(Sales contract), 주문서(P/O), 판매계약서(Sales note) 등	◎

※ ● : 필수 제출, ◎ : 해당 시 제출

※ 상기 서류를 순서대로 정리하여 전체를 1개 파일로 스캔(항목별 개별 스캔 x)

※ 스캔본(pdf)는 1페이지에 1장이 나와야 하며, 컬러 스캔 필수

※ 신청서 상의 데이터는 제출서류(증빙)상의 데이터와 필히 일치하여야 함

6. 평가기준 및 방법

○ (지원사업절차)

절차		기간	주요내용
①	지원기업 모집공고	공고기간 내	○ 참여기업 모집 공고(재단 홈페이지 및 기업지원사업 관리시스템)
	↓ 신청서 접수	공고기간 내	○ 온라인 접수
②	↓ 지원기업 선정 심의 개최	사업계획서 심의	○ 서류 또는 대면 심사
	↓ 결과통보 및 협약체결	심의 결과 통보 후 상시 협약 체결	○ 평가에 따른 지원 여부 개별통보
	↓ 사업수행 및 중간점검	협약 이후	○ 지원사업 사업수행 중간점검(현장점검)
	↓ 결과보고 및 성과분석	사업종료 후	○ 사업결과 접수 및 사업비 정산 ○ 성과 및 만족도 조사 실시

- **(평가기준)** 선정평가표에 따라 평가하여 합산 점수 60점 이상을 대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
 - 선정결과는 기업에 개별통보하며, 필요시 현장실사 및 서류보완 요청을 할 수 있음
- **(평가방법)** 외부전문가(3~5인)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 1차 검토 : 신청자격, 제출서류의 적합성 검토 (실무자)
 - 2차 평가 : 선정위원회를 통한 심의·평가 (선정위원)

7.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사업신청 및 선정 이후 관련 규정 및 기준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에 신청한 참여기업에게 있음
- 서류가 허위 또는 중복인 경우 지원취소 및 지원금 환수할 수 있음

8. 사전 지원 제외 대상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
- 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자본전액잠식
 -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한도가 5 억원 미만인 과제를 수행하는 기업, 창업 5년 미만의 중소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산업기술분류 상 대분류 기준 바이오·의료분야의 과제의 경우 임상, 시험 등을 위한 투자 포함) 및 투자기관의 대출형 투자유치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기업,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경우는 예외
 -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기업 또는 대표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동일 사업 내용에 대해 중복으로 지원받는 경우
- 기타 본 사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9.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 부정수급과 관련된 기업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제34조, 동법 시행령 제59조, 울산테크노파크 수탁관리지침 및 관련 법령 등에 의거하여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음